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오중균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오중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2월 28일

발의자 : 강수진, 고영옥, 김경이, 김육영,
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 오중균,
이관우, 이용진, 이인순, 이호건,
임태근, 임현주, 정기혁, 정병기,
정해숙, 진선아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2조, 제30조제2호)

- “6세 미만” ⇒ “7세 이하”
- “보육교사” ⇒ “보육교직원”

나.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 보조 신설(안 제30조제10호)

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사전협의 : 여성가족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3. 6. ~ 2025. 3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6세 미만”을 “7세 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친권자·후견인”을 “친권자·후견인,”으로 한다.

3. “어린이집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명이상”을 “10명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6조제3항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법인”을 “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“경우”로 한다”를 “경우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에”를 “영 제13조에 따른 기능 및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10명이상”을 “10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취소 할”을 “취소할”로 한다.

제30조제2호 중 “보육교사”를 “보육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유아”란 <u>6세 미만</u>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“<u>어린이집</u>”이란 <u>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보호자</u>”란 <u>친권자·후견인</u>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5.·6. (생 략)</p> <p><u>제3조(위원회의 설치)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0명 이상 20명</u> 이내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7세 이하</u>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어린이집</u>”이란 <u>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</u>을 말한다.</p> <p>4. ----- <u>친권자·후견인</u>, ----- ----- -----.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(위원회의 설치)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10명 이상</u> -----</p>

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
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
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
중에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
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6조
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서
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
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
임명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13조(위탁운영) ① 국공립어린이
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
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
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
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
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(이하 “규칙”이라고 한다) 제24
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
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보육
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
를 결정한다.

③ (생략)

제14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

-----.

② -----

----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
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
조제3항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위탁운영) ① 구청장-----

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위원
회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탁기간) ① -----

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무상사용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21조(기능)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(이하 “센터 등”이라 한다)에서는 영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3조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24조(자문위원회) ① ~ ③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기능) ① -----

----- 영 제13조
에 따른 기능 및 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10명 이
상 -----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자문위원회) ① ~ ③ (현

략)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28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0조(비용의 보조 등)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보육교사 인건비
3. ~ 9. (생략)

<신설>

10. (생략)

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라 -----

-----.

제28조(위탁의 취소) -----

--- 취소할 -----.

제30조(비용의 보조 등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보육교직원 --
3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비용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